

부룬디 (Burundi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, 군인 및 경찰, 공무원과 계약에 의한 근로자, 인턴, 견습생	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, 군인 및 경찰, 공무원과 계약에 의한 근로자, 인턴, 견습생	-
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4% / 없음 / 6%	4% / 없음 / 6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450,000 BIF / 법정 월 최저임금	450,000 BIF / 법정 월 최저임금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 이상, 가입기간 15년 이상	60세 이상, 가입기간 15년 이상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기간 최근 3년 또는 5년간 평균월소득(높은 값)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을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	가입기간 최근 3년 또는 5년간 평균월소득(높은 값)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을 가입기간마다 평균월소득의 2%	-
일시금	가입기간 최근 3년 또는 5년간 평균월소득(높은 값) x 납부연수(12개월 단위)	가입기간 최근 3년 또는 5년간 평균월소득(높은 값) x 납부연수(12개월 단위)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벨기에-콩고 및 르완다-우룬디 근로자연금)
- 현행법 : 2002년(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, 군인 및 경찰, 공무원과 계약에 의한 근로자, 인턴, 견습생
- 임의적용 : 이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가입이력이 있는 자
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 및 판사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소득의 4%, 특별히 힘든 노동의 경우 5.8%, 임의적용의 경우 10%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
 - 법정 최저일급은 농촌지역의 경우 105 BIF, 도시지역의 경우 160 BIF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상한소득은 450,000 BIF
- 자영자
 - 해당 없음
- 사용자
 - 월임금지급액의 6%, 특별히 힘든 노동의 경우 8.8%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
 - 법정 최저일급은 농촌지역의 경우 105 BIF, 도시지역의 경우 160 BIF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상한소득은 450,000 BIF
- 정부
 - 없음, 사용자로서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60세 이상(조로(早老)의 경우 55세, 위험한 근로의 경우 45세), 가입기간 15년 이상
 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 - 노령청산금
 - 60세 이상,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5년 미만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
 - 장애발생 전 1년 중 6개월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66% 이상의 소득활동 능력 영구적 상실로 판정된 경우.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간요건 없음

- 국가사회보장기구에서 승인한 의사가 소득활동능력 상실여부를 판정함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며, 사망 시 가입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, 16세 미만의 미혼 고아(견습생인 경우 18세 미만, 학생인 경우 21세 미만, 장애를 가지고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인 부모 및 조부모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지급 중단
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, 16세 미만의 미혼 고아(견습생인 경우 18세 미만, 학생인 경우 21세 미만, 장애를 가지고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가입자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쪽)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매 12개월 당 2%
- 최저연금월액은 도시지역 법정 월 최저임금(160 BIF)의 60%
- 최고연금월액은 가입자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쪽)의 80%까지 지급
-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
- 가입자가 노령연금 및 산재 영구장애급여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높은 연금액 100%에 낮은 연금액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. 가입자가 조로증이 있고 60세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음
- 급여는 제도의 재원에 따라 조정(가장 최근 조정은 2010년에 시행)

• 노령청산금

- 가입자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쪽) x 납부연수(12개월 단위)

○ 장애연금

- 가입자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쪽)의 3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매 12개월 당 2%
- 퇴직연령 도달 전 청구 시, 퇴직연령 전 매 1년마다 6개월의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

- 최저연금월액은 도시지역 법정 월 최저임금(160 BIF)의 60%
 - 최고연금월액은 가입자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월 평균소득(둘 중 높은 쪽)의 80%까지 지급
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액의 50%
 - 가입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령 가능. 가입자가 장애연금 및 산재 영구장애연금 수급권을 동시에 획득한 경우 높은 연금액만 지급. 가입자가 조로증이 있고 60세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음
 - 급여는 제도의 재원에 따라 조정(가장 최근 조정은 2010년에 시행)
- 유족연금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수급 자격 있는 각 자녀에게 지급. 완전 고아의 경우 40% 지급
 - 부양부모 및 조부모연금 : 기타 수급권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각 부모 및 조부모에게 지급
 - 유족연금 합계의 최대금액은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유족은 유족연금 및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음
 - 급여는 제도의 재원에 따라 조정(가장 최근 조정은 2010년에 시행)
 - 유족청산금
 - 사망자가 받을 수 있었던 노령청산금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(배우자 50%, 자녀 25%, 기타 부양가족 25%). 유족청산금 합계의 최대금액은 사망자가 받을 수 있었던 노령청산금액의 100%

7 관리운영기관

- 인권사회성별부(Ministry of Human Rights, Social Affairs, and Gender)
 - 전반적인 감독 제공
 - <http://www.droitshumains.gov.bi>
- 국가사회보장기구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3자 위원회 및 위원장의 관리 하에 운영되며,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함
 - www.inss.gov.bi

<2019년 ISSA 자료>